

< 환수내역 안내사항 >

1. **환수대상 금액의 계(①)**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(②)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(③)의 합계입니다.
 - 당해연도 발생액(③)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.
2. **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(④)**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(⑤)과 자녀장려금(⑥)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.
3. **미환수액(⑦)**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(①)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(④)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 - **미환수액**은 10년간 발생하는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, 10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. 다만,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.